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정황통지의 해석에 관한 연구*

홍 장 희** · 김 지 정***

<차례> _____

- I. 서 언
 - II. 정황통지에 관한 최근 판결
 - III.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정황통지
 - IV.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향
 - V. 맺는 말
-

주제어 : 임원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 신고 및 통지, 보험 사고발생 통지 의무, 설명의무

<국문초록>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당하여 법상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고로 한다(Claim made policy).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 배상청구 제기 사실 통지,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통지, 피보험자의 회사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은 배상청구 제기 등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의 선행조건도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신고 및 통지’ 조항의 일부만을 채택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이 미국 보험회사의 약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정황통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황통지는 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임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인 정황만이 기재된 통지로는 불충분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정황통지를 보험사고 발생통지의 일종이라고 하고, 통지의무조항과 연결된 청구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영문본)은 국내법 체계에 비추어 보험계약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의무관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상법 보험편에 비해 보험관계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조항들도 있으나, 기업보험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라는 특성

* 이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금융감독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주저자, 금융감독원 부국장,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교신저자,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변호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논문접수일(2020.01.19), 심사개시일(2020.01.28), 게재확정일(2020.02.15)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까다롭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전반적인 정비와 공동인수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I. 서 언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¹⁾. 담보방식은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및 방어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배상책임방식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약관은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임원이 제3자로부터 제기당한 배상청구(Claim), 이로 인하여 확정된 손해액(Loss)을 정하고 있으며, 정황통지(Reporting and Notice)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각기 다른 사건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책입과 관련하여 정황통지를 비중있게 다루었다.²⁾ 대법원 판결은 정황통지를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 일종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그 외 설명의무, 위험발생 증가와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하급심 판결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개념, 정황통지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우조선해양(주)의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쟁점이 분식회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집단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고 그 결과가 보험

1)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296억 원으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1,188억 원)의 2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그 직업군별로 임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규모가 가장 크고 의사(21.0%), 회계사(11.6%), 금융기관전문인(1.8%) 순이다.

2)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11.8. 선고 2019나2009574 판결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회사의 보상책임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판단은 재론의 여지없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법학계에서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도 회사법적 관점에서 회사의 감시기능, 임원의 과도한 법적책임 완화 등을 주제로 삼다가 최근에 와서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과 관련된 판례 등을 다루고 있다.³⁾⁴⁾

본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상 정황통지의 해석에 따라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정황통지 조항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쟁점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와 책임범위에 관하여 고찰하고, 상법상 각종 통지조항 및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판결에 비추어 정황통지의 법적성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황통지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황통지가 유효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성의 정도를 검토함으로써 정황통지의 의미 및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보다 견고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식을 토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제도개선 방안을 현행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및 공동인수제도의 개선과 규제정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3) 김선정,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회사감시기능”, 『경영법률』 제11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103면~120면; 김선정, “임원보수와 이사책임감면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9권 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445면~471면; 전한덕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해석과 명시·실명 의무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63면~199면; 홍진희,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07, 25면~56면 등.

4) 그동안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도 보험약관의 해석 및 적용보다는 보험계약 체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으나(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다19503 판결,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69259 판결 등), 최근 대법원 2016.7.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및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에서 보듯 보험자의 면책, 설명의무, 고지의무 위반 등 상법,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등을 망라하여 약관해석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II. 정황통지에 관한 최근 판결

1. 서울중앙지법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의 사실관계

대우조선해양(주)은 2011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수주에 공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2014년까지 매년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시하였고, 자산과 수익을 부풀리다가 2015년 8월 17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서야 3조 39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 분식회계임이 밝혀져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과 최고재무책임자, 안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⁵⁾ 한편 대우조선해양(주)은 대우조선해양(피보험회사) 및 소속 임원(피보험개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별로 주간사로 달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2014.7.25. ~ 2015.7.24. 기간 동안은 KB손해보험을, 2015.7.25. ~ 2016.7.24. 기간 동안은 메리츠화재보험을 각 주간사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⁶⁾(이하,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정황통지에 관한 쟁점은 2015년 7월 15일 TV조선「저가 수주 부메랑, 대우조선 2조 손실 숨겨」, 연합뉴스「'대규모 적자' 대우조선해양 고강도 구조조정 검토」 등의 기사가 보도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위 언론 보도들의 내용은 대우조선해양(주)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2조원대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그동안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주)은 제2보험계약으로의 계약갱신을 추진 중이던 2015년 7월 22일 제2보험계약의 주간사인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위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제1보험계약 주간사인 KB손해보험에 통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주) 담당자가 E-mail로 관련 공문을 파일로

5) 이와는 별개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 등 690여명의 원고가 대우조선해양, 안전회계법인을 공동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 약 30여건에 소송가액도 1,180억 원 규모에 이른다.

6) 제1보험계약 【보험기간: 14.7.25~15.7.24, 인수보험사: KB(30%), 메리츠(25%), 롯데(20%), 현대(15%), 동부(10%)】.

제2보험계약 【보험기간: 15.7.25~16.7.24, 인수보험사: 메리츠(45%), KB(10%), 롯데(15%), 현대(10%), 동부(10%), MG(10%)】.

첨부하여 송신하였고, KB손해보험은 E-mail을 수신하였다⁷⁾. 그리고 2015년 7월 25일 대우조선해양(주)은 메리츠화재보험을 주간사로 하는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5년 8월 10일 KB손해보험은 본 건 통보가 정황통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우조선해양(주)에 발송하였으나⁸⁾, 대우조선해양(주)은 이후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2015년 8월 20일 KB손해보험은 대우조선해양(주)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제1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면책통보를 하였다.⁹⁾ 이후 2016년 7월 13일 대우조선해양(주)의 사외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송의 피고로 포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⁰⁾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들은 2016년 7월 20일 메리츠화재보험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 이후에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2016년 7월 20일 대우조선해양(주) 사외이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과 이후에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배상청구정황을 메리츠화재보험에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22일자 통지가 보험약관상 정황통지인지를 두고 제1보험계약 주간사인 KB손해보험과 제2보험계약의 주간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은

- 7) 대우조선해양이 KB손해보험에 보낸 E-mail 본문에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본 공문은 2015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기 위한 공문이며, 이 공문이 당사가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내는 공문이 아니라라는 점 알려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 되어 있고 첨부된 공문공문번호 없음, 대표이사의 직인은 날인되어 있음)에는 “2015년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과 관련 하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당사의 2분기 실적 등에 대한 보도로 인해 향후 보험금 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8) KB손해보험이 대우조선해양에 보낸 공문에는 “귀사에서 2015.7.22.자에 당사에 송부한 임원배상책임보험관련 공문은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제11조(신고 및 통지)나 배상청구(Claim)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면서 공문에서 명시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당사의 2분기 실적 등에 대한 보도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 이로 인해 예상되는 배상청구, 부당행위의 성질, 잠재적 피해의 성질, 배상청구 요구자 등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9) 2014년 7월 대우조선해양(주)가 KB손해보험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당시 질문서상 “15. 귀사의 어느 한 임원이라도 이 보험의 대상이 될 손해배상청구에 미칠지도 모를 행위, 과 또는 해태에 관한 지식, 정보 등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12~2014년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10) 2015년 9월 30일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주 등이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처음에는 사외이사들이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년 7월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기한 소송부터 사외이사가 피고에 포함되었다.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5년 7월 22일자 통지가 유효한 정황통지라면 제1보험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 30%, 메리츠화재보험이 25%의 보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2보험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 10%, 메리츠화재보험이 45%의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주) 사외이사 4인이 제1보험계약 주간사인 KB손해보험과 제2보험계약의 주간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제2보험계약의 주간사인 메리츠화재보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제1보험계약 주간사인 KB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첫째 제1보험계약 기간중 보험약관이 정하고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고, 둘째 그 정황통지가 유효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i) 정황통지 당시 특정 정황으로부터 구체적인 배상청구의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황이 있다면 정황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ii) 2015년 7월 15일자 언론보도에서 대우조선해양의 2015년 2/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미 분식회계 및 투자자들의 소송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던 점, (iii) 제2보험계약 주간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은 언론보도 이후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공문을 제1보험계약 주간사인 KB손해보험에 보내 향후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던 점, (iv) 2015년 7월 15일자 언론보도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5년 9월 30일 대우조선해양 및 그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배상청구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정황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주)이 제1보험계약 주간사인 KB손해보험에 보낸 2015년 7월 22일자 공문이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상청구에 관한 애매하고 일반적인 포괄적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발송 의도 또한 정황통지의 의사로 보내졌다고 보았다.

Ⅲ.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정황통지

1.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와 책임범위

회사의 임원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원인이 다양하고, 상법 내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내·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 등 업무별 특성이 다른 대상을 ‘임원’으로 통칭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논의에서 임원의 배상책임도 배상의무자별 업무의 특성, 배상책임을 이행할 대상,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주체, 배상청구권의 법률상 원원 등을 유형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¹⁾ 다만, 본고에서는 민사관계의 배상책임이 보험법에 구현된 구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려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사외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때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관계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경영업무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으로 ‘고의·중과실에 의한 임무 해태’, ‘제3자의 손해’, ‘이사의 임무해태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¹³⁾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책임보험의 원리에 맞게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 ‘손해 및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사고 발생통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이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당하여

11) 이사는 업무집행상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로 인한 각종 민사 내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나아가 책임발생시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김정호, 「회사법」, 제5판, 법문사, 2019, 471면.

12)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22판, 박영사, 2019, 1075면.

1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등.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보험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보험약관상 담보조항은 '이사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제기 당하여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제3자의 이사에 대한 배상청구'는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반해, 이사의 부당행위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존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무방하다.

이처럼 '제3자로부터 제기당한 배상청구에 기인하여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가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보험금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로 인하여 확정된 피해배상액이 된다. 문제는 단일 또는 상호 연관된 부당행위에 기인하여 여러 건의 청구가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제기되어 일부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걸치게 되는 경우 보험기간 이후에 제기된 청구들을 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 또는 이사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고자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단일하게 평가되는 특정 '임무해태 행위' 내지 '부당행위'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1인 또는 수인이 여러 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만이 보험기간 중 현실화 되었다고 하여 나머지를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 이러한 문제를 손해 개념으로 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대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즉, 여러 건의 배상청구가 단일 또는 연관된 부당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그러한 배상청구로부터 야기된 각각의 손해는 하나의 손해로 의제되며, 최초의 배상청구가 제기된 보험기간 중에 나머지 배상청구도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리하면 상법 제401조 등 법상 책임 원인에 기인하여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구현되어 있다. 첫째, '배상청구를 중심으로 '보험사고'가 정의된다. 둘째, 이사가 행한 '부당행위의 단일성'을 기준으로 '손해범위'가 확정된다. 셋째, 이사의 '부당행위의 단일성'이 '보험사고'의 개념을 확장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이사의 부당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것은 맞으나, 이는 책임한도액을 그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사의 부당행위 자체가 보험사고이기 때문은 아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정황통지의 법적성질

(1) 상법상 각종 통지조항에 대한 검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리적으로는 (i) 사고의 발생, (ii) 가해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iii)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한 민·상법상의 배상책임 확정, (iv)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v) 배상책임 이행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단계로 짚어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보험자가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피보험자가 야기한 일정한 사고로 피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전제되므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책임 특히 불법행위책임과 결합되어 있다(이하, '책임보험관계' 및 '배상책임관계'라 한다.)¹⁴⁾ 양자는 당사자 및 청구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구분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배상책임관계와 책임보험관계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배상책임보험의 이러한 특성은 보험을 통한 피해자 구조라는 측면에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각종 통지의무 조항이다.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사고처리 및 손해사정의 노하우를 갖춘 보험자가 배상책임관계에 적시에 관여하여 손해액이 적절하게 산출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보험편의 각종 통지의무 및 그와 연관된 효과 조항으로는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및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가 제1장 통칙에 규정되어 있고,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및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가 제2장 손해보험 제5절 책임보험 편에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14)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354면.

1)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와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배상청구가 보험 사고임이 명백하기 때문에'¹⁵⁾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722조 제1항)의 이행으로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제657조 제1항)가 동시에 이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보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로써 보험사고 발생 통지 조항(제657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배상청구 사실 통지 조항(제722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각각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법은 보험편 통칙에 있는 보험사고발생 통지(제657조)¹⁶⁾ 외에 책임보험편에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722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상법이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한 정의를 열어두고 있어(제719조) 약관에 따라 배상청구, 손해사고 등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보험사고가 배상청구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만으로 충분하나, 보험사고가 손해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도 통지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것으로 이해된다.¹⁷⁾ 결국 이들 조항은 독립된 존재 의의를 지니고 피보험자에게

1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책임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고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i) 손해사고설, 손해배상청구설, 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 배상의무이행설이 대립한다. 손해배상청구설은 상법 제720조를 실정법상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피보험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간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설로 평가되나, 손해사고설이 종래의 다수설인 것으로 보인다(양승규, 앞의 책, 359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1판, 박영사, 2019, 753면 등) (ii) 이론적으로는 손해사고설이 타당하나 실무적으로는 개별 책임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보험약관에 의해 정해진다는 견해로는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632면. (iii)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은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방식(occurrence basis; 손해사고기준)과 손해배상청구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는 방식(claim-made basis; 배상청구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견해로는 홍진희 앞의 논문 26면.

16) 이러한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보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로 보는 학설(정찬형, 앞의 책(각주15), 643면)과 통지의무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험자가 어떤 경우이든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미 알고 있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간접의무로 보는 학설이 있다.(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터, 2006, 199~202면).

17) 보험자가 피해자와 보상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기습적으로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수행할 소지도 있으므로 기왕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제657조)와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722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각자가 가진 의미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으로는 제72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 손해액 또는 손해 규모의 확인, 손해의 방지와 경감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정보를 통지의무 자료부터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¹⁸⁾ 독일 보험계약법 제31조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사고를 확정하거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고 있어 이러한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¹⁹⁾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내지 ‘배상청구 제기’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i)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ii) ‘보험사고’에 관한 정보와 ‘배상청구’에 관한 정보를 구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보험 사고 조사에 착수하여 배상책임을 확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제공 하되, (iii) 보험자가 사고발생 조사 및 손해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iv) 다만, 상법이 정보의 제공 범위 및 종류까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보제공범위에 관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은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 「①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② 피해자 및 기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④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바람직해 보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의무위반시 보험자가 증가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46조 제1항 제2호 가 라, 제2항, 부록 <표 1> 참조).

18)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약관 제50조의 취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송을 제기당한 피보험자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부적정한 손해배상액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금액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손해를 전보한다는 자동차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폐해를 피하고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소송에서 적정한 배상액이 정해지도록 하여 보험회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소송에 관여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2145 판결).

19) 독일 보험계약법 제31조(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1.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사고의 확정을 위해서 또는 보험자의 급부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증거자료가 보험계약자에게 공평의 입장에서 그 제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보험자의 계약상 급부에 대하여 원리가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제3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다음의 사실로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2)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료 산출, 보장한도제한, 인수거절 등의 기초가 되었던 피보험자의 위험상태가 변경 또는 증가되어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율이 현저히 높아져 기존의 계약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피보험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간접의무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²⁰⁾ 결국, 피보험자는 자신이 처한 위험상태가 단순히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시점 또는 상황에서야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법 제652조의 위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 위험증가시 계약 조건을 다시 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에서 문제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에 관한 분쟁은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를 확정할 때 의미를 갖는 부당행위(wrongful act, 이 사건에서 분식행위)가 제1보험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2015년 7월 22일자 언론기사는 배상청구의 제기 가능성이 높아진 사정에 불과할 뿐 부당행위 자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기사가 보도

20)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되었다고 하여 그 시점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험사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법 제652조를 정황통지와의 관계에서 검토할 실익은 없어 보이나,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에 그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3) 보험금 지급 청구로서의 '배상채무 확정사실 통지의무'

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i) 보험사고의 발생, (ii)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 통지, (iii) 손해액 확정 (iv) 보험금의 청구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고 발생 사실 내지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였다고 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발생 내지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는다. 상법 제723조는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재판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의 이행으로 보험자의 손해사정이 개시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도 정해진다(제657조 제1항, 제658조). 그러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사실의 통지로(제657조 제1항) 보험자의 보험사고 조사가 개시될 수는 있겠지만, 피보험자의 배상액이 확정되어야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제723조 제1항) 비로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진다(제723조 제2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살펴보더라도,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는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7일을 초과할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은 책임보험 편에 제723조를 둬으로써 책임보험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피보험자의 이행청구,

즉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이행지체에 빠트릴 수 있는 이행청구는 배상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사실상의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배상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이는 단순 요구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의미 있는 보험금 지급 청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에 관한 문제는 보험금 지급 청구로서의 배상채무 확정사실 통지의무와도 무관하다. 배상채무 확정사실 통지의무는 (i) 보험사고 발생, (ii) 보험사고 발생사실 통지, (iii) 손해액 확정이라는 과정을 모두 거친 이후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자가 이를 불이행할 시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해 위 판결에서 문제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제11조의 배상청구(또는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피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실과 그 정황에 관한 통지’를 묶어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이라고 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을 ‘이 사건 청구조항’이라고 한 후에 이 사건 청구조항은 상법 제652조 및 제657조와 다르게 보험금 청구 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라고 판시하였다.²¹⁾

21)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는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예측되는 상황, 원인, 일자, 관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 통지한 경우, 그 이후에 그러한 상황이나 부당행위, 그와 동일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통보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제17조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피고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청구 조항’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 조항과 사건 동의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청구 조항 …은 상법 제652조와 제657조, …과 다르게

위 판시에 따르면 법원은 정황통지를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제652조)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상법 제657조)로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 상태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을 새롭게 산정하여 보험료를 재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의무지운 것이다. 위험변경증가의 쟁점으로 검토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험기간 중 직업(직무) 변경이 있다.²²⁾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루어진 것과 유사한 이 사건 영문약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위험변경증가 사유는 피보험자(회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되어 해당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사 등이 외부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당할 위험이 증가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언제나 위험변경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이 정황통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신고 및 통지) 조항과 별도로 존재함은 물론이다.²³⁾ 또한 보험료 기초가 회사 자산으로 되어 있고²⁴⁾ 메리츠화재보험이 청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해 파악한 내용도 회사 임원

보험금청구 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므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보험약관의 해당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설명 없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2)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로 법원은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한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등의 통지와 계약해지) 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를 단 순히 되풀이 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 23) 제15조(다른 회사의 매입 또는 설립)는 ‘피보험회사가 신규 설립, 흡수·합병 등으로 다른 회사를 신규로 편입한 경우 해당 회사의 임원들은 신규로 편입된 이후에 행한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이진 보험계약으로 보장을 받는다. 다만 신규 편입을 위하여 지출한 급부가 피보험회사 총자산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회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사실을 보험자가 요구하는 정보와 함께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피보험회사의 매각)는 ‘피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는 등의 사유 발생시 보험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장은 유지된다. 다만 피보험자 개인이 흡수합병되기 전에 행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에 대해서만 보장이 제공된다. 피보험회사는 흡수합병 등의 사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정보와 함께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 수, 회사의 총자산·발행주식 총수, 모든 자회사의 업종·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자회사별 임원 수 등인 것에 비추어 보면 임원배상책임보험 실무에서 보험사고의 위험은 기본적으로 회사 자산의 규모를 기초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위험변경증거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체결 당시 평가한 위험의 양이 변경되었을 때에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통지하게 하여 보험계약의 조건을 다시 설정하려는 것인데 반해 정황통지는 보험사고(배상청구 제기)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보험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므로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은 '위험변경증거 통지와 계약해지'(상법 제652조)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배상청구 자체가 보험사고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실과 '그 정황에 관한 통지'는 모두 상법 제657조의 보험사고 발생통지 내지 상법 제722조의 배상청구 제기사실 통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미국 약관 및 판례법상 정황통지의 유효성 및 구체성

미국 판례상으로도 이 사건 보험약관과 유사한 약관을 두고 정황통지의 유효성에 관해 여러 차례 다루어졌다. 정황통지의 유효성이 다루어진 맥락은 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으로 실시된 정황통지가 충분한 구체성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정황통지 조항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미국 판례상 정황통지의 유효성 및 구체성에 관한 판시를 살펴기로 한다.

(1) 보험약관상 정황통지 조항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 미국 Chubb 보험회사의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policy(Ⅱ)(Chubb form)”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한 약관으로²⁵⁾ 정황통지에 대해서는 당해 약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다.

24) DOL Policy(Ⅱ) Premium Basis : Total Assets 1,645,800,000,000 won.

(영문본) Reporting and Notice

11. The insureds shall, as a condition precedent to exercising their rights under this policy, give to the company written notice as soon as practicable of any claim made against any of them for a wrongful act.

If during the policy period or extended reporting period(if exercised) an insured becomes aware of circumstance which could give rise to a claim and gives written notice of such circumstance to the company, then any claims subsequently arising from such circumstanc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or the extended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circumstance were first reported to the company.

The insureds shall, as a condition precedent to exercising their rights under this policy, give to the company such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s it may reasonably requi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description of the claim or circumstances, the nature of the alleged wrongful act, the nature of the alleged or potential damage, the names of actual or potential claimants, and the manner in which the insured first became aware of the claim or circumstances.

(국문본) 신고 및 통지

11. 피보험자들은, 이 증권에 규정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당행위에 기인하여 그들에게 제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기간 또는 확장신고기간(행사되었을 때)동안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어 그러한 정황을 회사에 서면으로

25) 이 보험약관은 영문본과 번역본으로 되어있으나, 보험증권에서 “이 증권의 한국어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제작된 것이므로 사고 시 모든 보상은 해당 영문 가입조건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영문본과 한국어 번역본 사이에 어떤 상충이 발생할 경우 영문본이 지배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의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의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동일하다.

통지하였다면, 그 정황으로부터 야기된 모든 추후의 배상청구는 그 정황이 최초로 회사에 신고된 보험기간 또는 확장신고기간 중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보험자들은, 이 증권에 규정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협조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배상청구나 정황의 묘사, 주장되는 부당행위의 성질, 주장되는 또는 잠재적인 피해의 성질,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배상청구 요구자의 성명, 그리고 피보험자가 최초로 그 배상청구나 정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동 조항은 피보험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배상청구 제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이 보험기간 또는 확장신고기간 동안 보험회사에 통지되었다면 추후 모든 배상청구는 최초로 신고된 보험보장기간 중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황통지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할 것을 피보험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국문 번역본에는 클레임(이하 ‘배상청구라 한다)을 손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보험약관 제29조(용어의 정의)는 배상청구(Claim)와 손해(Loss)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배상청구는 “부당행위를 사유로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i)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서면요청, (ii)소장, 소환장, 청구서 또는 그와 유사한 소송절차의 송달에 의하여 개시된 민사소송, (iii)소환장 또는 고발에 의하여 개시된 형사소송, (iv)고발통지, 공식적 수사 명령서 또는 그와 유사한 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개시된 공식적 행정소송 또는 감독기관 소송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항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손해는 ‘부당행위로 인해 제3자로부터 제기된 배상청구로 정의하고 있는데²⁶⁾ 이러한 용어 정의는

26) 이 보험약관 제29조(용어정의)에서 ‘손해’란 담보가 적용되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피보험개인에게 제기되는 각각의 배상청구 및 각 보험기간 중의, 그리고 행사되었다면 확장신고기간 중의 모든 배상청구들에 의하여 피보험개인이 법률적으로 지급 책임을 지게 되는 전체 금액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액, 판결액, 화해지급액, 비용, 방어비용 및 법적대표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손해는 (i) 피보험개인이 계약, 협약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지급책임을 면제받는 금액으로서

제1조(보장조항)의 ‘배상청구에 의하여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를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의해 그 의미가 명확해 진다.

또한, 피보험자의 정황통지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회사는 배상청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그 예시로써 배상청구나 정황의 묘사, 부당행위의 성질, 주장되는 또는 잠재적인 피해의 성질,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배상청구 요구자의 성명, 최초로 배상청구나 정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등) 제공에 협조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미국 판례의 검토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Chubb 보험회사가 작성한 약관을 그대로 차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황 또는 정황통지의 의미를 미국 판례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법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배상청구에 대한 유효한 통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사실 등에 기초한 정황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상청구를 야기한 피보험자의 부당행위 또는 특정행위, 피보험자가 제기당한 배상청구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정황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과는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대법원에서 충분한 심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미국 법원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FHLBB(Federal Home Loan Bank Board : 연방주택대출은행위원회)가 주택대출은행 및 그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주택대출은행은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주택대출은행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제공한 정보는 대출채권 자산의 가치가 악화되고 있고, FHLBB가 은행의 대출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대출 중 일부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부 대출은 은행직원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것이었다. 주택대출은행은

피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여 주지 아니한 금액, (ii) 피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배상청구 또는 잠재적 배상청구의 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피보험회사(그 이사회 및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금액, (iii)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과금 또는 기중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대한민국 밖에서 선고된 배가(倍加)손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이 정하고 있는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정황에 대한 통지의무 이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 ‘정황’, ‘부당행위’가 모두 단일한 사건으로부터 제기되는 배상청구의 같은 원인이며, 이 취지를 표현하고자 약관이 ‘such’라는 단어로 ‘부당행위’를 수식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당행위에 대한 통지의무가 향후 배상청구를 수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정황을 동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정황에 대한 적법한 통지는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은행이 보험회사에 배상청구의 정황통지로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보험자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약관상 정황통지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²⁷⁾ (ii) 은행이 보험회사에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상 정황통지의무에 대한 단순 서술과 함께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가 잠재적 보험금 청구권자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한 것이 정황통지로서 유효한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약관상 정황통지의 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행한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질 누군가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 통보를 받거나, 임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 오류, 누락 등 구체적인 부당행위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가능한 가장 빠르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FDIC 조사와 관련하여 은행이 ‘부당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직위 유자’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27) 【Resolution Trust Corp. v. Artley, 24F.3d 1363 (11th Cir. 1994)】, (The court explained that “event”, “circumstance”, and “wrongful act” to the “event or circumstance which may subsequently give rise to the claim”, such that the policy only made sense if it was construed to require notice of the “wrongful act” related to, or accompanying, the “event”, or “circumstance” that may give rise to claim. Thus, the court concluded that adequate notice of an “event” or “circumstance” that may give rise a claim must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related “wrongful act.” Where a bank provided financial documents to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er that demonstrated that the bank’s loan portfolio was in trouble, such notice was insufficient in that it did not constitute specific notice of wrongful act of any director or officer covered under the policy.), 20 A.L.R. 6th(Originally published in 2006) American Law Reports ALR 6th., §13. Sufficiency of content of notice-Held insufficient absent description of wrongful act of insured.

특정 사건, 오류, 조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한 정황통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²⁸⁾ (iii) 은행이 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을 발견하고 이를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상 잠재손실이라며 보험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이를 유효한 정황통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향후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임원의 행동이나 업무누락 등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은행의 통지에 임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 횡령 사실의 발견 등 일반적인 정보들만 포함되어 있어 정황통지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²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판례는 유효한 정황통지가 되려면 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일반적 정황만이 기재된 통지로는 불충분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4. 서울중앙지법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사건에서 법원은 「3. 다. 예비적 피고 KB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15. 7. 22. 자 공문이 정황통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 KB

28) 【F.D.I.C. v. Caplan, 838 F. Supp. 1125 (W.D. La. 1993)】 (The court explained that notice of the embezzlement did not predict or threaten formal proceedings against any of the bank's directors or officers, and that discovery of the embezzlement alone did not expose any negligent act or breach of duty on the part of any director or officer. finding that the policy provided no coverage for the FDIC's claims, the court further concluded that summary judgement was not precluded by the insure's failure to demonstrate that it was prejudiced by the failure to give notice of potential claims.”, 【Federal Deposit Ins. Corp. v. St. Paul Fire and Marine Ins., 951 F. 2d 1259(10th Cir. 1991) (applying Utah law)】 , 20 A.L.R. 6th(Originally published in 2006) American Law Reports ALR 6th., §13. Sufficiency of content of notice-Held insufficient absent description of wrongful act of insured.

29) 【Federal Deposit Ins. Corp. v. St. Paul Fire and Marine Ins., 951 F. 2d 1259(10th Cir.1991)】 (Whereas the policy specifically required the insured to give notice of any act or omission on the part of a director or officer that might give rise to a subsequent claim, the court noticed that letter merely mentioned the policy without supplying any information about any of the directors and officers, and found that such general information was not sufficient to trigger coverage under the claims made policy.) , 20 A.L.R. 6th(Originally published in 2006) American Law Reports ALR 6th., §13. Sufficiency of content of notice-Held insufficient absent description of wrongful act of insured.

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조, 제11조 2문에 따라 제1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통지된 이 사건 공문에 기술된 정황으로부터 야기된 배상청구인 이 사건 청구로 인해 원고들이 지출한 방어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³⁰⁾ 이는 보험약관 제1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은 없으나, 보험약관 제11조 2문의 정황통지가 있으니 정황통지에 의하여 KB손해보험에게 보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왜냐하면 제1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법원의 사실 인정에 명확히 드러나 있고, 제11조 2문에 대하여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판결에서 본 것과 같은 법적 성질 논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보험약관 제11조(신고 및 통지) 조항은 보험사고 발생통지의 일종이며, 보험사고 발생통지 조항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책임이 도출될 수는 없다.³¹⁾

만일, 이 사건 정황통지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유라면 체계상

30) 위 판결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문이 정황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2)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3) 이 사건 공문을 정황통지로 볼수 있는지

가) 통지의 구체성

나) 공문 발송 의도

다) 이 사건 공문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2문에 정한 유효한 정황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위적 피고 메리츠화재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 예비적 피고 KB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KB손해보험은 이사건 보험약관 제1조, 제11조 2문에 따라 제1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통지된 이 사건 공문에 기술된 정황으로부터 야기된 배상청구인 이 사건 청구로 인해 원고들이 지출한 방어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1)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조항(제1,2,3조), 보장제의 조항(제6,7,8조), 책임한도액 및 공제액(제9조), 신고 및 통지(제11조), 방어 및 해결(제12조), 위험의 변동(제15,16조), 용어정의(제2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및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응된다(부록 <표 2> 참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내지 제6조(보험금의 청구)로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도출하는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문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보장조항(제1,2,3조)에 없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고 및 통지조항(제11조)에서 도출할 수는 없다.

보장조항에 편제되는 것이 옳다. 정황통지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한다면 다른 보험금 지급사유인 배상청구에서처럼 그 정의 조항에 의미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정황통지는 약관 제11조의 중간 단락에 '배상청구를 야기하는 정황'이라고 스치듯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판시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위 하급심 판결은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II.2.에서 살펴본 법원 판시 중 (ii)·(iv) 부분은 배상책임관계에서 분식회계가 상법 제401조 등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iii) 부분은 위 법원이 앞서서와 같이 정황통지에 의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책임유무가 일개 보험회사의 지시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어 보험사고의 우연성에도 반한다. 이러한 오류는 배상책임관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리를 만연히 책임보험관계에 그대로 대응시킨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배상책임관계에서의 원인행위인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책임보험 관계에서의 보험사고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양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여야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은 보험자의 구성이 대동소이한 갱신계약이기는 하나 각각이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비록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에서 원고들이 2개 보험회사를 각각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조항 해석을 통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도출시키는 방식으로 검토하여서는 안 된다.³²⁾ 즉, 법원은 원고순서를 특정한 바에 따라 주위적 청구인 메리츠화재보험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을 먼저 살피게 되었는데 주위적 피고인 메리츠화재보험의 주요 항변이 '이전 보험기간 중에 KB손해보험에 대하여 유효한 정황통지가 있었으므로 메리츠화재보험은 이 사건 약관 제6조(보장제외 조항)(a)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32) 혼동하기 말아야 할 것은 피보험자가 제1구간의 보상책임을 묻고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는 면책사유(제6조)로서의 정황통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일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보험자를 달리하여 1년 단위로 다시 체결되는 경우 후행 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하여 선행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것이고, 법원이 그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다보니 반사적으로 제1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논리구조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책임은 제2보험계약과 별개로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유무, 책임한도, 통지조항 이행여부를 차례로 살펴야 한다. 만일 원고들이 KB손해보험을 주위적 피고로 특정하여 이를 먼저 심리하였다면 제1기간 중 보험사고인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론

앞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황통지는 국내법상으로는 보험사고 발생통지의 일종이며, 불이행시 효과는 보험자가 증가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란 ‘배상청구’이므로 그 사실만을 알려서는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피보험자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배상청구를 이루는 구체적인 제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결국 정황통지에서 ‘정황’이란 피해자인 제3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제기한 배상청구에서 배상청구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정황통지’는 단일한 보험사고를 확정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보상액이 도출되도록 배상책임관계에 관여하는 기회제공 기능을 담당한다.³³⁾ 다만, 국내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 내지 ‘소제기 사실 통지’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원, 증거관계 등을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굳이 생소하게 ‘정황통지’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해는 이 사건 영문약관 제11조(신고 및 통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먼저, 배상청구기준을 택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보험

33) 이처럼 배상청구보험(claim made policy)에서 순수하게 보험사고 발생사실만을 통지하거나 소가 제기된 사실만을 통지하여서는 통지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인 배상청구(claim)가 제기된 원인행위(wrongful act) 등 제반 정황 정보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① 배상청구가 야기될 수 있는 정황에 관한 통지가 없을 경우 보험자로서는 약관상 보상책임 한도인 손해(one loss)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예정인 제3자와의 접촉이 어렵고, 접촉을 하더라도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배상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하다.

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청구된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조사하게 되며, 어느 시점에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는지는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하여금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보험금 청구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것이다(제11조 1문). 다음으로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을 통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미국 판례에서 보듯 정황통지는 ‘피보험자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구체적으로 특정된 배상청구권자’,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행위가 그 회사 임원의 배상책임이 되는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사고인 최초의 배상청구가 이미 제기된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제기될 후발 청구들이 최초의 배상청구와 ‘단일 또는 연관된 부당행위에 기인한 단일한 사고’여서 최초 청구를 제기당한 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 후 제기될 수도 있는 후발 청구들까지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확정하도록 해준다(제11조 2문). 마지막으로 이 사건 영문약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거치는 상법상의 각종 통지조항을 세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의 1문과 2문에 포섭되지 않는 정보³⁴⁾에 대한 포괄적인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1조 3문) 이처럼 이 사건 보험약관 1,2,3문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법상 유효하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보험자에 대한 일련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각을 별개로 분리하여 상이한 취지로, 예컨대 2문만 따로 떼어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의 근거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34) 1문은 보험기간 중 이미 제기된 배상청구를, 2문은 보험기간 종료 후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배상청구를 각각 염두에 두고 피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문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 영문약관 제9조(책임한도액 및 공제액) 제1문이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보험기간내 최초의 배상청구가 제기되고, 그 배상청구와 연관된 부당행위에 기하여 후발 청구가 제기되었다면 후발 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불문하고 보험기간 내 제기된 배상청구로 의제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는 본래 보험기간중 제기된 배상청구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예컨대 피보험자가 최초로 제기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사고접수를 하면서 소장의 청구원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었다면 보험자로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배상청구가 들어오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인수한 위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IV.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향

1.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개선

(1) 문제의 제기

그동안 과도한 절차 비용 등의 문제로 거의 시문화된 것으로 여겨지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고군분투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주주행동주의가 화두로 논의되는 가운데 단순히 소수주주의 연합형태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소송의 원고로 나서고 있다. 또한 상법 제393조 제2항(‘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이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사가 이사회를 통해 다른 이사(특히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및 그를 정점으로 하는 집행기관)를 감독할 책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7가합578912 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안은 대우조선해양(주)의 분식회계에서 파생된 여러 사건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 보험금, 그중에서도 아직 본안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시작 단계에서 지출된 방어비용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사건이기 때문이다. 종래 동양 CP 등의 사태에서 보듯 기업의 분식회계는 행정 내지 형사 소송을 시작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집단 소송화 하는 경향까지 보인다.³⁵⁾ 따라서 대표이사(상근이사)와 회사 내부의 재무담당 임직원이 연루된

35) 분식회계 및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이 문제가 된 동양CP 사태의 경우 ① 행정적으로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 일부 정지 1월(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체결 및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 및 과태료 350백만원,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요구 상당(3명), 정직(1명), 감봉(16명)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되었고 ② 형사적으로는 회사 경영진이 경영권 보전을 위해 회사의 재무리스크를 고객과의 접점인 동양증권의 창구직원을 통해 시장에 떠넘긴 행위가 재무제표 분식 등과 겹치면서 그룹의 핵심 의사결정권자 및 집행자에게 사기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8191 판결) ③ 민사적으로는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2건의 신청 사건 및 본안 사건이 재판계속중이다. 그중 상대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사건을 보면 2014.6.13. 소장과 동시에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1심에서 소송불허가 결정(2016.9.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3556 결정)이 내려지고 2심에서 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나(2017.8.4.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79 결정)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여(2018.7.5. 대법원 2017마5883)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이사(상근이사) 등은 분식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 유죄판결을 받거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일정한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³⁶⁾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는 대표이사(상근이사)를 정점으로 한 사내 집행부에 대하여 감독기능을 소홀히 한 사외이사들이다. 이들은 비록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므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수는 있으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법 제401조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소송은 소수주주가 아닌 국민연금의 소제기로 현실화되었지만 근거 법조가 자본시장법 제162조이고 중요 쟁점이 분식회계 사실로 공통인 점을 감안할시 구성원이 모집되면 집단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등).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등이 사외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이 문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사외이사들의 소송비용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종결된 시점에는 국민연금 등 원고들의 승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외이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상책임관계에서 확정된 금액이 책임보험관계에서 보험자에게 청구될 것이므로 메리츠화재보험 또는 KB손해보험 중 보상책임이 인정된 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총 보상한도인 300억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다.

분식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본안 재판이 계속중인 사례로는 (주)씨모텍의 유상증자관련 집단소송이 있다. (주)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는 인수자금 300억중 270억을 외부차입금을 조달하였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외부차입금 270억 중 220억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허위사실을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고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폐지되었다. 이에 주주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인수인이었던 디비금융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허가 결정이 내려졌고(2011.10.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2010 로 집단소송허가결정이 내려졌고, 항고·재항고되었으나 2016.11.7. 대법원2015마4027호로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됨) 이 결정을 이어받은 본안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2018.7.1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 이에 대해 쌍방이 불복하여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다.(2019.3.25. 접수 대법원 2019다223747 사건).

36) 메리츠화재가 대우조선해양 및 前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징역 9년이 확정된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7가합509169 판결).

(2) 설명의무에 의한 문제 해결의 한계

1)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은 영문약 관상의 정황통지를 보험사고 발생(상법 제657조)의 일종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위 판결이 갖는 의미를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판례 사안에서는 ‘통지의무조항 및 청구조항, 그리고 ‘면책조항’의 해석이 둘 다 문제되었는데³⁷⁾ 법원은 종전부터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자주 다루어지던 면책조항³⁸⁾ 뿐만 아니라 통지의무조항과 연결된 청구조항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영문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조항이 청구조항과 연결되면서 통지의무가 ‘보험금 청구의 요건 내지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보험금 청구의 요건 내지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의 의미를 ‘통지의무 위반 시 아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새기게 되면 상법 제657조 위반 시 그로 인해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것에 비해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보험인 경우에는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원칙)를 적용할 수 없다 보니³⁹⁾

37) 통지의무조항(제8조) 및 청구조항(제17조)은 앞의 각주 21)참조, 이와 별도로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을 부담보 특별약관에 ‘보험회사는 1933년 증권거래소법 ...을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것에 기인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8)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3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은 중소기업은행이 엘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기관종합보험(중업원비행담보)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 선행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견한 후 어떠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약관상 선행조건을 이러한 통지를 해태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약관의 위 문구를 상법 제657조 제2항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둘째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선행조건 대신 상법 제65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업보험이 상법 제663조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판시 해당 부분 : “①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인 한국법에 의하더라도 손해발견 사실의 통지

기업보험이라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약관은 약관규제법 제2장의 불공정약관조항 중 상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반해 제1장 총칙에 편재된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는 적용된다는 점도 법원이 영문약관의 정황통지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쟁점으로 삼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⁴⁰⁾

2) 영문약관상 ‘권리행사의 전제로서’에 대한 문구의 이해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이 설명의무 불이행을 쟁점으로 삼아 보험자가 과도하게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찬성할만하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만일 보험자가 이 사건 영문약관 제11조(신고 및 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보험자는 최대한 빨리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영문약관의 “as a condition precedent to exercising their rights under this policy”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법 보험편, 더 넓게는 사법 원리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무가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원고가 30일 내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증가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피고를 면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손해발견 사실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법 제657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만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23818 판결,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다52336 판결”).

40) 앞의 대법원 2005.8.25. 선고 2004다18903 판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5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3조 제2호) 약관조항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 전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2004다18903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참조 조문으로 상법 제638조의3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모두 적시하고는 있으나, 앞서 판시대상 약관이 기업보험으로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그 논리대로라면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상법 제638조의3도 적용되지 않게 되어 결국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를 다룬 것으로 이해된다.

민법상 서면 기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때에만 효력이 부여되는 법률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하는데 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⁴¹⁾가 아닌 한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과 내지 제척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소구할 수 없어 자연채무로 남게 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문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문구로 인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 책임을 영영 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면책사유 유사의 효과를 주게 되면 이는 약관 체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과도하기도 하다.

생각하건대 위 문구는 앞서 살펴본 상법상의 각종 통지조항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권리의 '발생'과 '행사'라는 측면에서 책임보험을 살펴보면,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까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판결 확정 과정을 거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권리가 완성되어 간다. 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사실상의 요구가 아닌 피보험자의 청구로 인해 보험자의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청구를 의미한다. 보험의 종류 및 보험사고의 유형에 따라 (i) 보험법 통칙에 있는 통지조항만을 적용받는 보험이라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발생 즉시 특별한 시차를 둘 필요 없이 바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지므로 보험사고 발생 통지는 보험자의 채무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보험금 지급 청구라고 볼 수 있겠다.(상법 제657조 및 제658조) (ii) 한편 책임보험은 보험사고발생 통지 이후에도 소계기 사실 및 채무확정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채무확정사실 통지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의 이행기가 정해지므로 채무확정사실 통지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보험금 청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상법 제722조, 제723조). 이처럼 상법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보험금 청구권이 형성되기까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협조할 사항을 세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영문약관은 제11조(신고 및

41)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법률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예컨대 혼인), 법률행위의 존재와 범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예 : 법인설립행위, 유언, 단체협약체결 등), 또는 외관을 신뢰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예 : 어음행위) 일정한 방식을 요구한다.(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4판, 신조사, 2015, 72면).

통지) 단일 조항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협조사항을 ‘권리행사의 전제’라는 표현으로 함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 사용례는 상법 및 표준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제하에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문약관이 통지의무 내지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를 언급함이 없어 제11조(신고 및 통지) 서두에서 ‘권리행사의 전제로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 및 그 정황을 통지하라고 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지의무 등을 이행하여야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고, 통지의무 등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식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결국, 국내법과의 관계를 따져볼 때 보험자가 영문약관 제11조(신고 및 통지)의 의미 및 내용을 제대로 설명한다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자는 0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0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00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된다.⁴²⁾ 마찬가지로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에서도 ‘통지의무 조항과 연결된 ‘청구조항’을 이와 같이 새기게 되면, ‘청구조항이 상법 제657조 제2항과 상충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약관에 없는 내용을 상법 제657조 제2항이 보충하여 들어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기업보험에 적용되지 않음을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3)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영문약관은 국내법 체계에 비추어 정황통지의 법적 성질 및 정황통지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다. (i) 먼저 정황통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보험금지급사유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반면

42) 이 경우 이러한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보험사고 발생 통지 내지 위험증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므로 하급심 판결은 상고심에서 변경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대법원 판시 중에서도 정황통지를 위험증가와 연결하여 보고 있는 듯한 설시는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⁴³⁾ (ii) 다음으로 정황통지를 불이행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영문약관의 문구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여 면책사유에 준하여 보험금을 이에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만큼 중대한 법적 효과를 야기하는 문구라면 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항이 명시·설명되어야지만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민사법 체계, 보험법, 영문 약관 자체의 체계 등에 비추어 위 문구는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영구히 저지할 사유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위 문구는 보험사고 발생 후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측이 보험자에게 협조하여야 할 의무 조항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문구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보험자가 면책되는 효과를 부여한 조항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가 법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즉, 보험자의 지체책임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므로 그간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던 사항들⁴⁴⁾과는 중량감이 다르다.

설명 의무는 그 자체가 고유 영역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문제가 안고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덮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이 통지조항과 이어진 청구조항을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찬성할 만하나, 이로 인해 청구조항이 면책조항 유사의 강력한 책임회피 근거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도 남기게 되었다. 이것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단 부분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43) 대법원 2016.7.29. 선고 2013다91474판결은 정황통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체로 위 판결과 유사하게 판시하고 있으나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4) 그간 판례를 통해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쟁점은 앞의 각주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보험업 법상의 설명의무 대상은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보험상품의 종류·명칭, 지급한도·면책사항·감액지급등 보험금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이다.(보험업법 제95조의 2, 시행령 제42조의2).

4) 영문본/국문본 약관에서의 설명의무 이행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문본과 영문본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 국문본이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게 된다. 약관규제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 조항 적용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약관규제법 제15조), 그 약관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을 것까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국문본 서두에는 “이 증권의 한국어 번역본은 참조상의 편의만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담보의 정확한 내용은 영문으로 발급된 증권의 조건과 면책조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증권의 영문판과 한국어 번역본 사이에 어떠한 상충됨이 발생할 경우, 이 증권의 영문판이 지배력을 가집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영문본이 약관이고 한국어 번역본은 설명자료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약관(영문본)과 설명본(국문본)이 불일치할 경우 약관(영문본)이 우선한다는 부분은, 설명본(국문본)이 약관(영문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양자간 불일치가 발생한 상태에서 약관(영문본)에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이 또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 경우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약관(영문본)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이기 때문이다.

(3) 소결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정황통지roman 한정하여 보더라도 정황통지의 법적 성질과 위반시 효과에 관하여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나아가 배상책임보험 일반으로 확장하여 볼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통지조항의 의미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려도 없어 예컨대 국민연금 등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제기할 시 그러한 청구가 허용되는지부터 쟁점이 될 것이다.⁴⁵⁾ 또한 면책조항에 미국의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거한 배상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h)) 이를 국내법에 전용하는 조항이 없는 점⁴⁶⁾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앞으로의 기업환경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거대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이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간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료 수준이 미미하였던 데다가 기업보험 내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라는 이유로 그 중요성에 걸맞은 사법적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대형 사고에 대비할 필요를 미처 체감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보장지역,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는 “.....이 증권의 규정에 대한 해석, 해설 또는 의미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며 그에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발생한 내국인 간의 분쟁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약관 조항을 일일이 국내법과 대조하여 해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⁴⁷⁾ 외국계 재보사와의 계약관리의 편의를

45) 약관 해석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작성자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익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과 관계되는 직접청구권 조항도 상법 제663조 적용 대상인지, 만일 적용대상이라면 피해자 보호 취지는 기업보험에서의 정비비대청성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보험이라는 이유로 상법 제663조의 적용을 배제할지 등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제3자가 원고 보험자가 피고인 소송이 된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의 대상 약관은 ‘피보험개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배상청구에 대한 방어의 의무는 회사가 아니라 피보험개인이 지게 됩니다(제12조 방어), ‘회사에 대상 소송은, 그 전제로서, 이 보험증권의 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는 제기될 수 없습니다(제28조 회사에 대한 법적소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46) 청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희망하는 기업조건란에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삭제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것을 보면 미국의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국내법 전용조항이 없어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은 보장하는 손해로 해석된다.

47) 대법원이 영문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을 판단한 사례로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외에도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관한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3다40729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다46747 판결 등이 있으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로는 2018.6.12. 결정 제2018-10호, 2017. 6. 27. 결정

위해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업보험이라는 명분으로 정보비대칭이 심한 가입자(예컨대 아파트 관리회사 등)를 상대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영문약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영미법계에서 별무리 없이 상용되는 약관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이론인 듯 약관 내용을 곡해하거나 원문이 왜곡된 자료를 인용할 우려도 있는 등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이 계약자, 감독당국, 법원 등으로 전가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공동인수제도 개선 및 규제정비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들이 위험관리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국가 중요시설 또는 공익목적의 거대위험 인수 등을 위해 보험정책상 필요성을 인정한 제도다. 따라서 인수하려는 위험의 단위가 커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처럼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불량물건이라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이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와 함께 공정당국의 협의도 받아야 한다.⁴⁸⁾ 현재 보험종목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공고되고

제2017-8호 등이 있다. 이 중 제2018-10호 결정은, 공동주택관리회사(신청인)가 00아파트에 관리소장, 경리직원 등을 파견하여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비 입출과 관련한 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보험회사(피신청인)와 회사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회사(피신청인)는 정보비대칭이 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등과 접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영문약관으로 회사종합보험계약(Employee Dishonesty and Forgery Coverage Policy)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보험회사(피신청인)는 쟁점과는 무관한 영문 약관조항을 제시하거나 기업보험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였던 사안이다.

48) 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 또는 폐지할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제2항은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위 제1,2항에 따라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 또는 폐지하더라도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절차도 생략할 수 있는데 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그러한 경우로는 (i) 보험회사의 상호변경·합병·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ii) 조문체제의 변경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있는 상호협정은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 배분에 관한 상호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의 공동인수협정” 등이 있다.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공동인수제도를 운영한다기 보다는 ‘공동인수 특별약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인수 주간사와 참여사가 보험증권에 명기된 인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한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간 권리와 의무는 ‘손해보험 협조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그간 공동인수의 근거에 관하여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청산협정’⁴⁹⁾을 법상 인가받은 상호협정으로 보고, 공동인수 특별약관이 이 협정에 근거하여 상법 제674조(일부보험)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한 상호협정 인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법상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체결(변경, 폐지 포함)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공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동인수 특별약관’만으로 상호협정 인가 제도의 입법 취지가 충족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⁵⁰⁾⁵¹⁾ 그간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⁵²⁾ 공동인수

49)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청산협정’은 2개 이상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보험료 및 보험금 청산 등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다(1978.10.18).

50)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의 인가를 받는 상호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동인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간사의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임의 공동인수는 경쟁 제한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손보사의 부당 공동행위(요율담합)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7.9.12. 전원회의 의결 제2007-443호).

51)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익목적의 특정 공동인수와 달리 임의적인 공동인수는 보험요율의 합리성 결여, 가격경쟁 저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보험사 공동인수관행 개선방안 검토(2003.2), 기초서류(공동인수특약)에 의한 간사회사 요율로 공동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인수방법 불허 방침 업계 예고(2003.9), 공동인수특약 개정안(안) 검토 (2003.12), 공동인수특약개정안 시행유보(2004.1)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보험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문제 제기로 시행이 유보되는 등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왔던 점을 볼 때 근원적 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52)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4108 판결 외 다수. 그러므로 보험료 수준 결정, 참여사의 재보험 출재율 조정, 공동 인수기준 운영 등 사실상의 공동행위를 상호협정이 아닌 특별약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공동인수 운영이 특별약관의 체결 또는 기초서류의 신고만으로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었거나 허용되는 업무위탁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보험자측이 다수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계약자측의 권리 침해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⁵³⁾ 실질 거래의 형태·위험 배분의 목적·보험료 수준 결정·보험금 지급제한·면책근거 등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건 보험약관에서 제기되는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인수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아울러 상호협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종목의 공동인수운영에 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수 대상 상품의 구조와 특성, 실질 거래의 내용과 절차 등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배분을 위한 합리적 목적임을 소명하여 공동인수 주간사 및 참여사 간 상호협정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맺는 말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1991년 당시에는 보험계약체결 등 실적이 미미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글로벌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와 함께 주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2005년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011년 현대자동차 주주대표소송 등이 제기되면서 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보험사고, 보상책임의 범위, 보험자 면책조항 및 보험계약상 각종 통지조항 등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보험약관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먼저, 정황통지의 법적 성질 및 위반 시 효과에 관한 논의를

53) 예컨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위임조항)가 “이 보험증권을 수락함으로써 주피보험회사는 사건 발생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의 주고받음, 보험료의 납부 및 이 증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급보험료의 영수, 협상, 배성에 대한 동의 및 승낙, 그리고 이 증권에 규정된 모든 통지의 주고 받음에 있어서 모든 피보험자들을 대리할 것에 동의하며, 피보험자들은 그러한 주피보험회사가 그들을 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하여 수인의 피보험자(개인)와 보험회사간 의사표시가 문제될 때 피보험자(회사)가 그러한 의사소통을 대신하도록 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동인수인 중 공동인수인을 대표하여 보험계약자 측과 의사연락을 담당하거나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할 때 보험계약자 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안에서도 제1보험계약의 주간보험회사와 참여사가 정황통지의 유효성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로서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작하기에 앞서 ‘배상청구를 중심으로 ‘보험사고’가 정의되며, 이사가 행한 ‘부당행위의 단일성’을 기준으로 ‘손해범위’가 확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황통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황통지를 보험사고 발생통지와와의 관계에서 보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므로 하급심 판결의 오류가 대법원에서 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황통지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판결 등이 면책사유에 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를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을 보면 법원은 “as a condition precedent to exercising their rights under this policy”의 의미를 문구 그대로 권리행사의 영구적 제한 정도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권리의 발생, 권리의 행사 및 그 제한, 권리의 소멸이라는 민사법의 기본 체계에 비추어 이미 보험사고로 정의된 배상청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서면으로’ 또는 ‘사유 발생 후 즉시’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구히 보험금청구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위 문구는 보험사고 발생 후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측이 보험자에게 협조하여야 할 의무조항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 실정법상의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엄밀한 법적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환기도 필요하며,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약관 내지 기업성 보험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먼저 발전한 보험상품이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약관도 그대로 차용되었고, 해외 재보험회사를 통한 거대위험의 분산이라는 특성상 그들에게 익숙한 영문약관이 우선되는 관행이 고착되었다. 일반의 보험약관이 약관규제법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받는 것에 비하여 영문약관은 많은 규제에서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예외를 당연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숙고해볼 일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영문본과 국문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국문본 또는 국내법상 증거증권에 불과한 한 두 장짜리 ‘보험증권을 활용하다가 사후 분쟁 발생 등 사정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 영문약관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문본을 교부하고 영문 조항을 읽어 설명한들 평균적인

한국인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리는 만무하다.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내국인 간의 분쟁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약관 조항을 일일이 국내 법과 대조하여 해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규제법 제15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즉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종’ 등의 약관은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약관규제법 제3조는 앞서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의 설명의무에 관한 쟁점에서 보듯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라도 적용되며, 이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로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내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영문본을 약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험 상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의 필요가 있다.

현행 공동인수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그 개선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공동인수제도의 운영을 통해 보험 산업이 국가 또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작동해온 효과를 감안할 때 거대위험의 인수나 보험계약자의 계약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보험정책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간사의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보험회사 단체와 계약자 간 단체의 협약에 따라 계약을 일괄 인수하는 임의 공동인수의 경우 경쟁 제한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의 인가 및 공정위와의 협의를 받은 공동인수라야 법령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동인수가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에 기초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막연한 인식으로는 공동인수제도가 직면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라도 명확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 록

<표 1> 상법상 각종 통지조항과 자동차보험약관 비교

상법 제4편 보험	자동차보험약관
<p>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 <p>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p>	<p>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p> <p>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p>
<p>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p> <p>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 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p> <p>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p> <p>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p> <p>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p> <p>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p> <p>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p> <p>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p> <p>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p> <p>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p> <p>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p>

상법 제4편 보험	자동차보험약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p>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p>	<p>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655 545 1096 680"> <thead> <tr> <th data-bbox="655 545 1096 587">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55 587 1096 680">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td> </tr> </tbody> </table> <p>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p> <p>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p>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표 2>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과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체계 비교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보장조항(제1,2,3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보장제의 조항(제6,7,8조)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조(책임한도액 및 공제액)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1조(신고 및 통지) (1) 피보험자들은, 이 증권에 규정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당행위에 기인하여 그들에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태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p>게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p> <p>(2) 만일 보험기간 또는 확장신고기간(행사되었을 때)동안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어 그러한 정황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그 정황으로부터 야기된 모든 추후의 배상청구는 그 정황이 최초로 회사에 신고된 보험기간 또는 확장신고기간 중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p> <p>(3) 피보험자들은, 이 증권에 규정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협조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이에 배상청구나 정황의 묘사, 주장되는 부당행위의 성질, 주장되는 또는 잠재적인 피해의 성질,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배상청구 요구자의 성명, 그리고 피보험자가 최초로 그 배상청구나 정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p>	<p>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p> <p>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p> <p>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p> <p>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단서 생략)</p> <p>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p>
<p>제12조(방어 및 해결)</p> <p>① 제3자가 피보험자인 임원에게 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방어할 의무는 피보험자 개인에게 있음</p> <p>② 피보험자가 배상액을 지급하거나 방어비용을 발생시킬 때에는 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 동의 부재시 보험자는 책임이 없음</p> <p>③ 제3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상청구의 조사, 방어 및 해결을 함에 있어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실질적으로 협조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 (이하 생략)</p>	<p>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청구권 행사시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함</p> <p>③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청구권 행사시 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협력할 의무 있음</p> <p>④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p> <p>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 등에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차를 대행할 수 있음</p>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③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제29조(용어정의) 배상청구, 방어비용, 피보험자(회사, 개인), 상호연관된 부당행위, 손해, 보험기간, 부당행위 등	제2조(용어의 정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증권,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금분담, 대위권, 보험기간 등

참고문헌

<단행본>

- 김정호, 「회사법」, 제5판, 법문사, 2019.
-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 임용수, 「보험법」, 제1판, 법률정보센터, 2006.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22판, 박영사, 2019.
- _____, 「상법강의(하)」, 제21판, 박영사, 2019.
-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4판, 신조사, 2015.

<논문>

- 김선정,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회사감시기능”, 「경영법률」 제11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 _____, “임원보수와 이사책임감면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9권 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 전한덕,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해석과 명시·설명 의무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 277200 판결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제8권 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홍진희,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 제1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07.

20 A.L.R. 6th(Originally published in 2006) American Law Reports ALR 6th., “§13. Sufficiency of content of notice-Held insufficient absent description of wrongful act of insured.”, 2016 Thomson Reuters.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Duty of the Insured to Notify Circumstances for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Hong, Jang Hee · Kim, Ji Jeong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covers losses that directors and officers of companies are legally required to sustain against claims for damages from a third party (Claim-Made Polic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provide for obligations of the insured to notify claims, notify circumstances that triggered claims, provi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regarding the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is, a lower court recently recognized the obligation of the insurer to pay insurance money by adopting only part of obligations of the insured to report and notify, despite non-fulfillment of insurance events or conditions precedent to claims of insurance money such as filing of claims in complianc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e policy, and the case is currently pending on the supreme cour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are closely following those of U.S. insurers, and precedents of the U.S. courts consistently stipulate that the notification of circumstances must contain detailed description of unfair acts of directors or officers that triggered claims, and thus notifications that only contain general circumstances are not su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upreme court provides that notification of circumstances is a kind of notification of the occurrence of insurance events, and a provision on claims related to the duty of the insured to notify requires insurance companies to make a clear statement and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policies for the insured.

Hence, various issues that could be raised with regard to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need to be reviewed.

In light of Korea's legal framework, the English version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policy that is currently used in Korea does not provide clearly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to insurance policies and contains provisions where liabilities can be attributed to its author.

However, it is one of business insurances that are internationally applied, thus requiring more careful approach to address issues.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this research proposes necessity for overall supplementation and modification of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nd an improvement of provisions on joint underwriting.

Key Words :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claim, circumstances that give rise to a claim, reporting and notice, obligation to notify insurance events, duty to explain